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216159	김원이의원	2026. 1. 19.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5.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일부개정법률안	2217642	정동만의원	2026. 3. 20.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5.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
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1항 중 “안전점검 결과 등”을 “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로 한다.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중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u>안전점검 결과</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 ----- ----- ----- ----- ----- ----- ----- . ----- ----- ----- ----- ----- ----- ----- ----- ----- ----- ----- <u>-----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u> -----

1. ~ 4. (생략) ② ~ ⑦ (생략)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생략) <신설> 제72조(벌칙) ① <u>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u>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① <u>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u>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제72조(벌칙) ① <u>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 -----. ② ~ ③ (생략)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① <u>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 -----. ② ~ ③ (생략)
--	--